



Myanmar

미얀마지사

국민의 안전한 식탁 위해 라벨링 규제 강화

일반 감염보다 사망률 높은 식품파생 질병

미얀마에서는 식품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에이즈나 말라리아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보다 많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정확한 라벨링으로 인한 잘못된 음식 섭취이다.

해마다 식품에서 파생된 질병으로 인해 10명 중 1명은 질병을 앓고, 3,300만 명이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인다. 그 중 5세 미만 어린이가 전체 사망자수의 1/3을 차지하며, 그 수는 무려 42만 명에 달한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 사무국장인 Kundhavi Kadiresa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매년 2억7,500만 명 이상이 음식으로 인해 질병에 감염된다고 밝혔다.

구호방법은 정확한 라벨링 표기

태국의 경우, 2014년 공포된 공중보건부 고시와 2017년 고시에 따라 식품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2017년 신규 식품 라벨링 규정을 공포한 이후 2018년에 세부 시행규정을 발표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1999년 식품 라벨 및 광고에 대한 정부 규정과 2018년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내놓은 가공식품 관련 라벨링 제도가 있다.

주변국들은 이미 식품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라벨링 제도를 정착시켜가고 있는 반면 미얀마는 상대적으로 뒤늦은 움직임을 보였지만, 라벨링 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재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중이다.

미얀마 정부는 2017년에 이미 현지 업체 및 수입업체에게 미얀마어 또는 영어로 된 라벨 부착을 요구하였지만 당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2018년에는 미얀마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의 약 90% 이상이 라벨 부착이 되어있지 않은 채 유통·판매되었고 그나마도 부착된 라벨조차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미얀마와 인근국의 국경지대에서 밀수되어

<매년 식품파생 질병으로 인한 결과>



질병 발생수,
**10명당
1명꼴**

건강이상 증세
3천 300명

전체 사망자 중, 특히 5세 미만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

1/3
420,000명



| 식품 파생 질병 발생 현황_WHO 통계 발표 |

판매하는 식품을 섭취한 후에는 질병을 얻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라벨링 제도 강력 시행 의지 보이는 정부

식품으로 인한 감염이나 사망 건수가 늘어나자, 미얀마 정부는 올 들어 강경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지난 3월 16일부터 미얀마 전역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라벨링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케 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미얀마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18년 미얀마 소비자보호 위원회는 유통·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라벨부착 의무화를 실시하고, 유통·판매되고 있는 식품 중 라벨 미부착 식품 및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엄중 경고·법적 규제·상품 판매 및 유통 일시중지·상품 회수 및 파기·사업 허가 일시 중지 또는 영구 박탈 등 단계별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 회장 U Zaw Min Win는 “현재 미얀마는 중국, 인도 및 태국으로부터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한 생활용품이 많아 미얀마어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

라벨링 의무사항
(a) 상품의 상표
(b) 상품의 성분, 크기, 수량, 순 중량, 보관법, 사용법
(c) 제조 날짜 및 유효기간, 제조번호
(d) 수입품일 경우,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및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e) 원산지 또는 재포장 위치
(f) 원재료, 원재료의 양과 비율
(g) 부작용 및 주의사항
(h) 해당 정부기관이 지정한 사항
(i) 상품에 대한 해당 기관의 연구결과와 (영양) 제품 보증서



| 유통·판매 시 표기의무 사항 |

이로 인해 제품을 잘못 사용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현지어 라벨 부착은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얀마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사무총장 U Than Htun은 “현재 미얀마에는 식품 라벨링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미얀마 소비자보호위원회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한 후, 라벨링 제도를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3월 미얀마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미얀마 라벨링 제도와 관련해,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식품 라벨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공표하였다. 포장식품 및 가공품, 신선품 등 미얀마 내에 유통·판매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미얀마어 또는 미얀마어와 영어로 병기된 라벨 부착을 강조하고 있다.

미얀마 식약청은 “라벨링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2백만 샌에서 2천만 샌까지 부과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라벨 부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미얀마 식약청의 154명 감독관들이 각 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식품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선품목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미얀마 네피도 소비자보호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현재 미얀마에서 시행되고 있는 식품 라벨링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되어 판매되는 신선품목에 관해 라벨을 부착해야 하지만 품목에 따른 유통기한을 정해놓지 않은 탓에, 판매자 측에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지정판매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미얀마 정부 측의 규제가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꾸준히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미얀마어로 라벨부착한 한국제품 |



| 기존 판매제품에 새 라벨 부착한 중국 제품 |

Key Point

각국의 라벨링 제도 면밀히 파악할 시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파악하도록 하는 라벨링 제도야말로, 건강에 위협이 되는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는 제도의 안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발주자인 동남아 지역에서도 차례로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한 기업 혹은 앞으로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안전한 원료와 가공·유통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후속 작업으로 라벨링 제도에 대한 철저한 숙지를 통해 해당국가 맞춤형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국가적 신뢰까지 획득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